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18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201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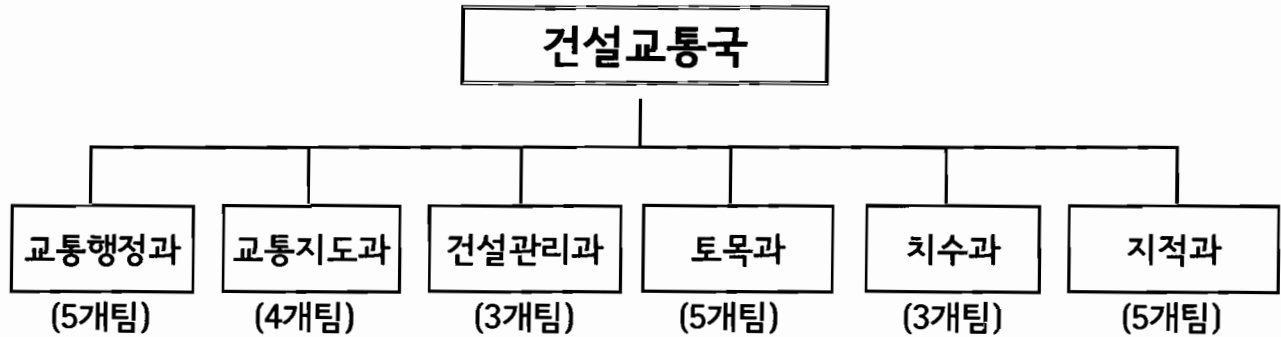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1
□ 교통행정과	2
□ 교통지도과	7
□ 건설관리과	12
□ 토 목 과	17
□ 치 수 과	25
□ 지 적 과	45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25팀



□ 인 력 ----- 207名

구 분	총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전문직
총 계	207	2	6	33	49	22	22	70	3
교통행정과	42	2	1	7	12	6	6	5	3
교통지도과	38		1	7	6	3	4	17	
건설관리과	27		1	4	5	3	3	11	
토 목 과	30		1	5	7	4	4	9	
치 수 과	45		1	3	9	3	2	27	
지 적 과	25		1	7	10	3	3	1	

교통 행정 과

□ 조직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39	1	1	7	9	10	2	6	3
현 원	42	2	1	7	12	6	6	5	3

※ 공로연수 1명(4급), 육아휴직 4명(8급 3명, 9급 1명) 포함

□ 업체 및 시설물 현황

마을버스	시내버스	개인 택시	화물 자동차	자전거 보관소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
10개 업체 92대	2개 업체 219대	1,312대	2,645대	78개소 4,036대	371개	28개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계	승용	승합	화물차	특수	이륜차	건설기계	비고
131,188	91,186	6,176	13,670	293	17,550	2,313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지확보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병행하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그린파킹 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부지매입, 유희부지 임대, 그린파킹 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장 조성대책 추진

□ 세부 추진계획

1)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추진목표 : 10면 이상
- 조성대상 :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심 미관저해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의 자투리땅을 임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2)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 추진목표 : 담장허물기 공사 30동 50면
- 사업대상 : 주택의 담장·대문을 허물어 법정부설주차장 외 추가 주차면 조성
- 사업내용 : 주차면 및 녹지조성, 무인 자가방범시스템(CCTV) 설치

3) 대형건물(아파트 포함) 유희 부설주차장 개방

- 추진목표 : 1개소 이상
- 개방대상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 지역내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등
- 추진방법 : 유희 부설주차장 일부를 구가 임대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단독, 다가구주택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
 - 임대료 :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요금을 건물주(입주자대표 등)에게 지급

□ 소요예산 : 470백만원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20백만원, 그린파킹 사업비 450백만원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운영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사업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독려
 -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 서울시 교통종합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세부추진계획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 3회 (2014년 1,4,7월)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센터 프로그램 DB 정비 : 2014년 1월
- 대중교통의 날 현장 캠페인 개최 : 2014. 4월 (5월, 6월, 9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실시 : 2014년 5월
- 과년도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 매월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 2014. 3월~4월
- 기업체 수요관리 참여 기업대상 전체설명회 : 2014. 7월

□ 소요예산 : 80,354천원

3.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자전거 이용 확대로 대기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등) 설치 및 관리
 -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수리 포함) 운영
 - 자전거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 폐방치 자전거 재활용 나눔 사업
 - 직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세부추진계획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설치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 사업내용 : 자전거무인대여소 운영 및 유지관리(공공자전거 교체)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수리센터 포함) 운영
자전거보관소 세척 및 방치자전거 수거 등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폐방치 자전거 재활용 나눔 사업
 - 사업내용 : 폐방치된 자전거 수거 재활용하여 불우이웃에 전달(100대)
 - 소요예산 : 5백만원
- 직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 사업내용 : 직원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상품권) 제공(월 20,000원×80명)
업무용 자전거 이용우수 부서 포상(1백만원)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소요예산 : 278백만원(구비)

4.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체납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로 올바른 자동차 소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 자동차관련 과년도 체납과태료(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11종)
- 사업규모 : 과년도 총 체납액 (추정 : 27,346건 / 8,962백만원)
- 정리목표 : 8,200건 / 2,600백만원(과년도 총 체납액의 30%)
- 사업내용
 - 체납자 재산 압류처분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징수불능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 추진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세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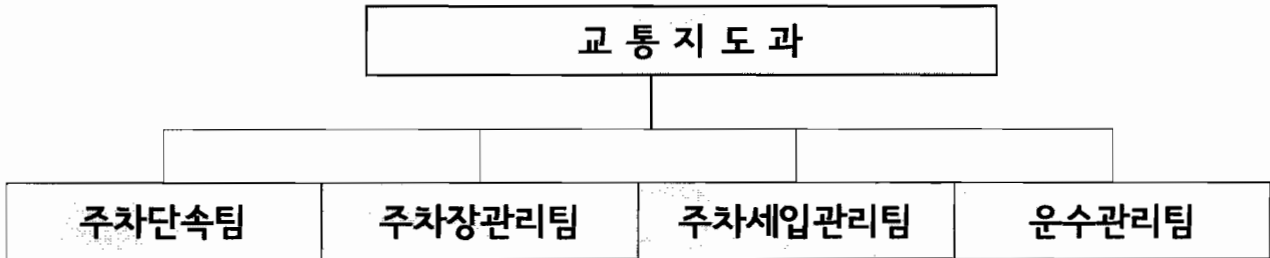
- 체납과태료 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월)
- 체납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정비 (연중)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연중)
-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고지서 : 홀수달, 안내문 : 짝수달)
-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상반기, 하반기)
- 체납자 재산(예금, 동산, 부동산,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압류 처분 (연중)
- 고액체납자 현장실태조사 및 징수활동 전개 (연중)
- 징수불능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연중)
-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시행(폐차대금 압류, 거주자우선주차 제외 등)

□ 소요예산

- 소요예산(구비) : 188,708천원

교통지도과

□ 조직 현황



□ 인력 현황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43	1	6	4	6		26
현 원	38	1	7	6	3	4	17

*지원근무 1명(9급) 포함

□ 장비현황

주·정차 단속 CCTV	차 량			
	계	CCTV 탑재	단속 승용차	견인차
64대	14대	6대	7대	1대

【주차장 현황】 ----- 총 10,369개소(동) 146,691면

유 형	개소(동)	면 수
시설 주차장 (견인보관소 포함)	12개소	1,408
노상·노외주차장	15개소	958
거주자 우선주차장	16개동	4,475
민영 노외주차장	50개소	2,338
건축물 부설주차장	10,276개소	137,512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 탄력적 단속과 계도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구민의 준법의식 고취
- 다각적인 교육 및 계도를 통한 선진 주차문화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운영
 - 단속장비 증설 : 고정식 CCTV 3대
 - 민원 폭증에 따른 단속인원 확대 : 지방시간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4명)
 - 견인업체 및 보관소 지도·점검
 - 불법 주정차단속 「어린이체험단」 운영
 -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 세부추진계획

- 고정식, 주행형 CCTV의 단속 알림을 통한 선진주차 질서 확립
- 상습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한 고정형 CCTV 설치 및 단속인원 확대로 구민의 준법정신 고양
- 견인업체 및 보관소 지도·점검 : 상반기, 하반기
- 불법 주정차단속 「어린이 체험단」 운영 : 여름방학, 겨울방학
-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 월 2회

□ 소요예산 : 297,509천원

- 불법 주정차단속 장비(무인단속카메라 및 서버 등) 구매 : 125,160천원
-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장비 유지비 : 172,349천원

2.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 기능미 유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학교 유휴공간,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사업규모 : 관내 부설주차장 10,276개소, 137,512면

□ 세부추진계획

-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 기능미유지 등 위법행위 정기점검
 - 점검방법
 - 조사요원 활용 전수점검 후 담당공무원 위법사항 확인
 -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정확한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위법사항 시정명령(2회) 후 행정처분
- 학교·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으로 주차난 해소
 - 추진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 30면 이상 건축물 등 유휴공간이 있는 건축물 주차장

□ 소요예산 : 38,602천원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등 : 24,994천원
- 부설주차장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3,608천원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 : 10,000천원

3.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정리 제고와 구재정 증대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총체납액 : 285,347건 / 13,178백만원(2013.12.31 기준)
- 정리목표 : 85,604건 / 3,954백만원
- 사업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중점관리 및 납부독려
 -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수시 발송
 - 대체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징수 담보물권 확보 강화
 - 인터넷 및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등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 고액체납자 소유재산(자동차, 부동산, 급여 및 예금등)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 세부추진계획

- 고액·상습체납자 적기 채권확보 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압류 기준 강화
 - 각종 재산압류(부동산·신용카드매출채권·급여 등)로 다각적인 체납징수
 - 예금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 차령초과 말소 등 차량 대체압류등록을 통한 체납징수 담보물권 확보
- 징수불능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집중정리
-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시행 징수활동 강화
 - 법원공탁금압류, 신용정보제공, 거주자우선주차 제외 등

□ 소요예산 : 748,924천원

- 우편요금 및 교통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4. 여객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여객자동차(버스·택시·화물)의 운행질서 확립을 통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주민 서비스 향상 도모로 대시민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여객자동차 및 운송사업체
- 중점 단속내용
 - 버 스 :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등
 - 택 시 : 승차거부, 합승,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징수 등
 - 화 물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자동차표시위반 등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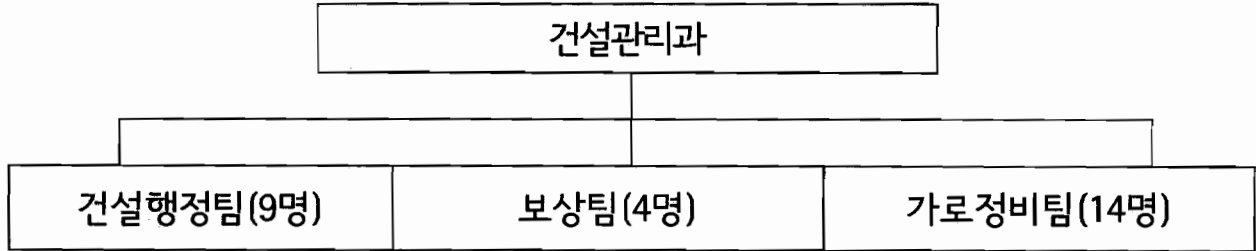
- 상시단속 : 자체단속
 - 이용승객 불편신고 및 언론 보도내용 집중단속
 - 심야 불법운행 택시 및 시내·마을버스 법규위반 사항
 -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 단속(전세버스, 화물) 등
- 특별단속 : 합동단속(설날·추석 연휴, 연말)
 - 서울시 단속반과 경찰공무원, 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 버스구민평가단 운영
 - 대중교통 버스의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및 친절서비스 향상 도모
- 운수업체 지도점검 강화 : 연 2회

□ 소요예산 : 28,592천원

- 버스구민평가단 및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운영비 : 11,492천원
- 법규위반차량 단속원 피복비 : 1,800천원
- 우편료 : 15,300천원

건설관리과

□ 조직 현황



□ 인력 현황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약직
정원	27		1	5	5	3	1	12	
현원	27		1	4	5	3	3	11	

※ 육아휴직 1명(9급) 포함

□ 국공유지행정재산 현황

계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7,275	3,494,166	3,696	1,088,392	2,801	1,770,788	778	634,986

□ 거리가게 현황

계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차량노점	기타
335	91	89	45	61	49

□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79	28	5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국·공유 행정재산의 도로 본래의 기능 회복 및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추진으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추진대상: 국·공유 행정재산(도로, 하천, 구거, 제방)
- 추진내용:
 - 실태조사반 편성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추진
 - 무단점유 추정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후 변상금 부과
 -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용도폐지 추진
- 추진근거: 국유재산법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 세부추진계획

- 2014년 국·공유 행정재산 정비 추진계획 수립:2014년 1월
- 이용실태 현장 조사:2014년 2월 ~ 2014년 11월
- 정기변상금 부과
 - 1차: 2014년 3월
 - 2차: 2014년 9월
- 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2014년 3월
- 원상회복 및 점용허가 등 사후초지 추진

□ 소요예산 : 35백만원(구비)

-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2.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공공용지 사용료 및 변상금의 효율적인 부과 및 지속적인 체납금 징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구 수입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공공용지 점용허가자 및 무단점용자
- 사업규모 : 4,275백만원(구비)
- 사업내용
 - 점용허가자에 대하여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 부과
 -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지적측량 후 공공용지변상금 부과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 추진근거 : 도로법 제41조 및 제94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 국세징수법

□ 세부추진계획

- 전수 과세자료 정비 및 정기분 자료 대사: 2014년 1월 ~ 2014. 2월
 -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점유면적,소유자 등)정리
 - 시도 및 구도 소유권 재조사
 - 장기체납자 과세자료 정비
-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 부과 : 2014년 3월
- 집중 체납정리: 2014년 5월 ~ 2014년 12월
 -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 상습고액 체납자별 담당자 책임제 지정 운영 및 채권확보
- 시효결손 처분:2014년 11월
 - 납부기간 5년 경과자 중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

□ 소요예산 : 200천원(구비)

- 압류촉탁수수료

3. 신속하고 적절한 손실보상 추진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 12월
- 사업대상 :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
- 진행절차
 - 현황조사, 토지(물건)조사 작성, 보상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 세부추진계획

- 사업시행부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보상의뢰 접수 후 보상업무 추진
-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추진 : 6개사업 13,407㎡(14,576백만원)

사업명	위치	면적 (㎡)	소요예산(백만원)
계	-	13,407	14,576 (구비2,950, 시비11,626)
경의선 서강역 주변 도로개설 사업	광성로41-11(신수동) ~ 신수동 81-160 간	1,658	1,600(구비)
연남동 361-32~375-103 간 도로개설 사업	연남로84(연남동)~연남동375-103 간	760	1,350(구비)
2014.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성산동 산11-66 외 1필지	3,512	3,098(시비)
합정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토정로 8-3 외 3필지	599	1,286(시비)
신수동 철도연변 공원 조성사업	백범로60(신수동) 외 2필지	340	2,742(시비)
성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마포구 중동 일원	6,538	4,500(시비)

- 미불용지 보상 추진 : 5건 338.3㎡(1,054백만원)

구분	건수	위치	지목	면적 (㎡)	소요예산 (백만원)
계	5	-	-	338.3	1,054
시비보상	5	마포동419-21 외 4필지	대, 전, 도로	338.3	1,054

- 보상 관련 소송수행 : 수용보상금 증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소요예산 : 3,684천원

-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684천원

4. 거리가게 및 도로상적치물 정비

시민의 통행권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거리가게, 도로상적치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거리가게 및 도로상적치물 등
- 사업내용
 - 거리가게 총량제(현 335개소) 및 실명제 실시로 점진적 감축 추진
 - 연중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계도단속으로 주민불편 사전예방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총79개소/ 가로판매점 : 28개소, 구두수선대 : 51개소)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취약시간대 효율적인 정비
- 추진근거 : 도로법(제45조, 제65조, 제83조, 제101조 등)

□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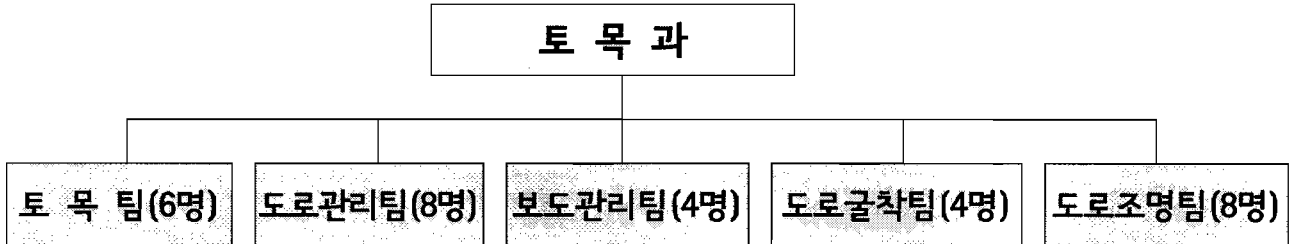
- 청결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불법 도로점용 근절)
 - 다중집합지역 및 민원다발지역(기업형)거리가게 정비 및 신규발생 억제
-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한 전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소통 강화
 - 거리가게 단체 및 거리가게 영업주와의 대화 채널 유지: 전업 및 자진정비 유도
- 지방시간제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채용인원: 4명
 -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
 - 근무시간: 주35시간

□ 소요예산 : 108,722천원(구비)

-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등 보수: 79,455천원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 일반운영비: 29,267천원

토 목 과

□ 조직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기능직
정 원	31		1	4	6	7	3	10
현 원	30		1	5	7	4	4	9

※ 육아휴직 1명(7급)

□ 장비현황

계	제설차	덤프차(2.5톤)	더블캡(1톤)	고소차(12m)	오토바이(100cc)
12	4대	2대	2대	1대	3대

□ 도로 및 조명시설 현황

도 로					조명시설	
도로연장(km)	도로면적(km ²)	주거가능면적(km ²)	도로율(%)	포장율(%)	가로등	보안등
419	4.04	14.38	28.08 (시:22.06)	100	7,060燈	9,891燈

□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 현황

○ 도로 시설물

계	고가차도	지하보차도	일반교량	지하보도	보도육교	옹벽	지하통로
21	1	1	2	2	2	10	3

○ 도로(교통)부속 시설물

충격흡수시설	방음벽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볼라드	방호울타리
2개소	10개소	155개	950개	1,416개소	1,677개	6,327경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연남동 361-32~375-103 간 도로개설공사

연남동 375번지 일대는 연남로와 단절된 지역으로 차량 및 지역주민들이 우회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361-32 ~ 375-103 간
- 규 모 : B=8~12m, L=79m
- 기 간 : 2013. 12. ~ 201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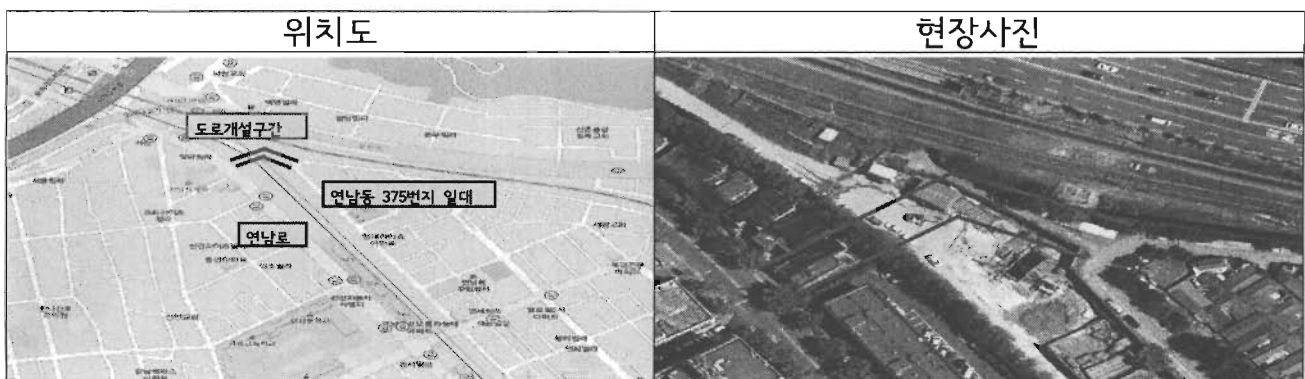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3. 10. 24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마포구고시 제2013-175호)
- 2013. 11. 2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마포구고시 제2013-187호)
- 2013. 11. 26 : 보상의뢰(토지 1필지, 건물 1동, 기타물건)
- 2013. 12. 12 : 공사발주
- 2013. 12. 30 : 계약체결
- 2014. 1. : 공사착공
- 2014. 1. ~ 2014. 2. : 보상완료(토지 1필지, 건물 1동, 기타물건)
- 2014. 3. ~ 6. : 공사시행 및 준공

□ 소요예산 : 1,350백만원(구비)

- 공사비 : 150백만원, 보상비 1,200백만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경의선 서강역 주변 도로개설 공사

경의선 철도의 지하화로 지상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간 철도로 단절되어 통행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93-4 ~ 81-160 간
- 규 모 : 도로개설 B=15m, L=105m
- 기 간 : 2014. 1. ~ 201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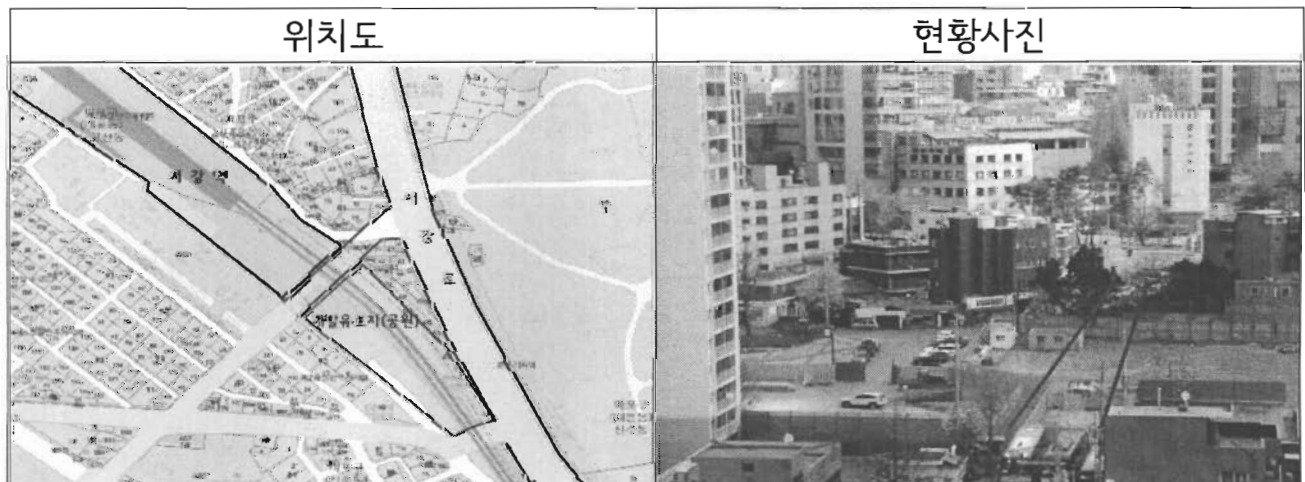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2.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14. 3.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4. 3. ~ 6. :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토지 8필지, 건물 1동)
- 2014. 10.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1,600백만원(구비)

- 공사비 : 170백만원, 보상비 1,430백만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성산다리의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 및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성산다리 : 성산동 275-1 ~ 성산동 200-362
- 노고산동 석축 : 노고산동 12-129

○ 규 모

- 성산다리 : 폭원 4m, 연장 50m
- 노고산동 석축 : 높이 5m, 연장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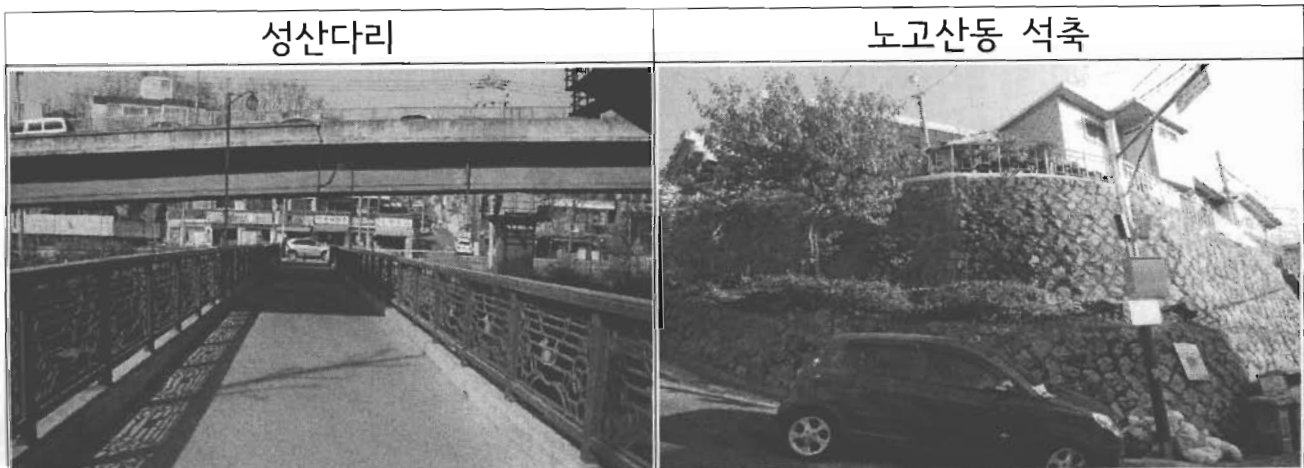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4. 2. ~ 2014. 6.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용역설계 및 발주
- 2014. 3. : 용역계약 및 착공
- 2014. 6. : 용역준공

□ 소요예산 : 20백만원(구비)

□ 현황사진



4.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수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 등 불량포장도로를 수시로 보수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아스팔트포장 350@, 보도포장 30@, 콘크리트포장 10@ 등
-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구비)

5.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침하, 물고임 등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량상태의 보도블록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걸기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보도
- 규모 : 불량 보도정비 23@, 측구정비 800m, 보·차도경계석 정비 300m
장애인편의시설(점자, 선형블록)정비 1@ 등
- 기간 : 2014. 2. ~ 2014. 12.
- 내용 : 평탄성이 불량한 보도(측구포함) 재정비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4.1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180백만원(구비)

6. 관내 도로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연간단가)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점검 및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시설 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도로시설물
- 규 모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소계	교량	지하차도	고가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지하통로	도로옹벽	방음벽	도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	방울타리
21	2	1	1	2	2	3	10	10개소	155개	950개	1,677개	6,327경간

- 기 간 : 2014. 2. ~ 2014. 12.
 - 정기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 내 용 : 대상물량 연간단가 체결 시행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보강 조치
 - 상·하반기 각 1회 전체시설물 세척
 - 훼손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 지속 정비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4.1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900백만원(구비)

7.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연간단가)

침하 또는 돌출되어 평탄성이 불량한 도로상 각종 맨홀을 정비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규 모 : 불량맨홀 정비 150개소
- 기 간 : 2014. 3. ~ 2015. 2.
- 내 용 : 침하 등 평탄성에 문제가 있는 맨홀 정비
- ※ 관내 맨홀 현황 : 총 22,266개
전기 422, 통신 3,079, 도시가스 712, 상수도 8,323, 하수도 9,251, 기타 479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150백만원(구비)

8. 관내 도로굴착·복구 공사(연간단가)

관내 도로굴착공사 현장의 신속한 복구로 도로기능의 조기회복 등 굴착복구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포장도로
- 규모 : 보도블록포장복구 30@, 콘크리트포장복구 20@, 아스팔트포장복구 100@
- 기간 : 2014. 3. ~ 2015. 2.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800백만원(도로굴착복구기금)

9.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노후 및 불량 가로등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부점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 규 모 : 가로등7,060등 / 분전반278면
- 기 간 : 2014. 2. ~ 2015. 2.
- 내 용 : 누전선로 보수 및 노후 가로등 정비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350백만원(구비)

10.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노후 및 불량 보안등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야간에 골목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 규 모 : 보안등 9,891등(전용주 5,148 한전주 4,259 건축물 484)
- 기 간 : 2014. 2. ~ 2015. 2.
- 내 용 : 노후·불량 보안등 정비 및 고장시설물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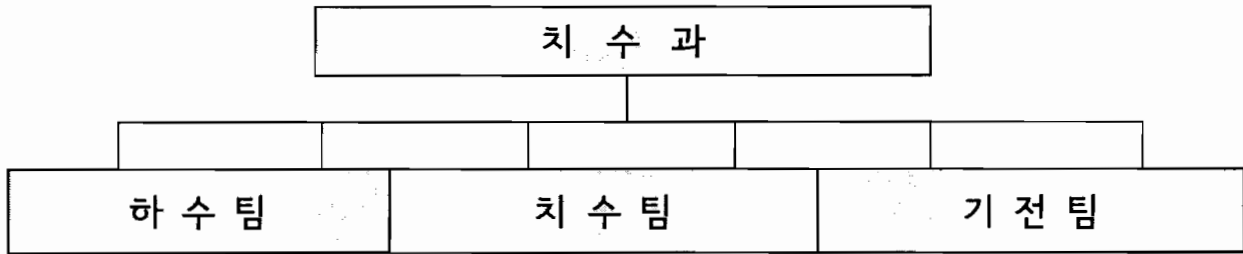
□ 세부추진계획

- 2014. 2. : 공사설계 및 발주
- 2014. 3.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5. 2. : 공사준공

□ 소요예산 : 675백만원(구비)

치 수 과

□ 조직현황



□ 인력현황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약직
정원	47		1	3	4	7	5	27	
현원	45		1	3	9	3	2	27	

□ 장비현황

준설기	착암기	캣타기	제설기	차량
7조(14대)	1대	1대	1대	5대

□ 하수·치수시설 현황

하수시설						치수시설				
관거	암거	U형 측구	맨홀	빗물 받이	횡단 하수거	하천	펌프장	펌프	수문	유수지 면적
432,184m	37,310m	7,050m	9,706개	17,838개	108개/753m	3개소	10개소	65대	21개소/49문	433,094㎡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합정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장기계속-최종)-완공

서울시의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합정배수분구 종합정비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하여 하수관로 성능개선을 통한 배수불량해소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6. ~ 2014. 8.
- 사업대상 : 합정배수분구 내 하수관거
- 사업위치 : 서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대
- 사업규모 : 하수관 정비(개량) D=300~1,200mm, L=19,238m
 - 1 차(2010년) : D=300~1,200mm, L= 2,423m
 - 2 차(2011년) : D=300~1,200mm, L= 2,922m
 - 3 차(2012년) : D=300~1,200mm, L= 6,673m
 - 4 차(2013년) : D=300~1,200mm, L= 5,160m (L=17,178m)
 - 5 차(2014년) : D=300~1,200mm, L= 2,060m
- 총사업비 : 20,117백만원(시비)
(설계 1,085백만원, 공사 17,082백만원, 감리 1,049백만원, 폐기물 901백만원)
 - 2014년 예산액 : 2,500백만원(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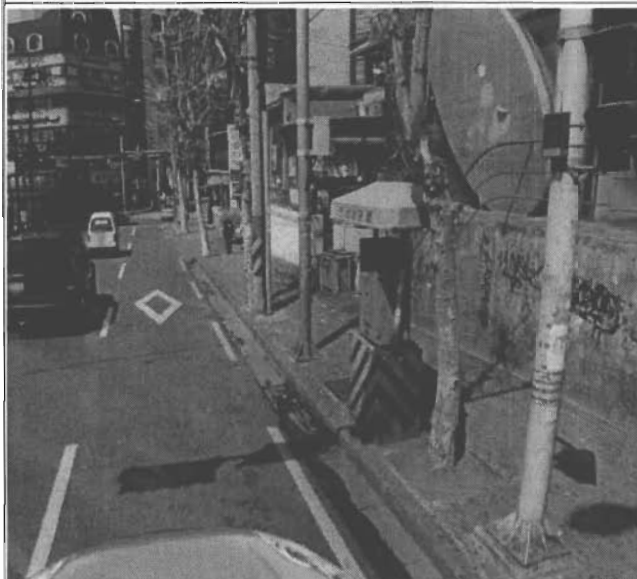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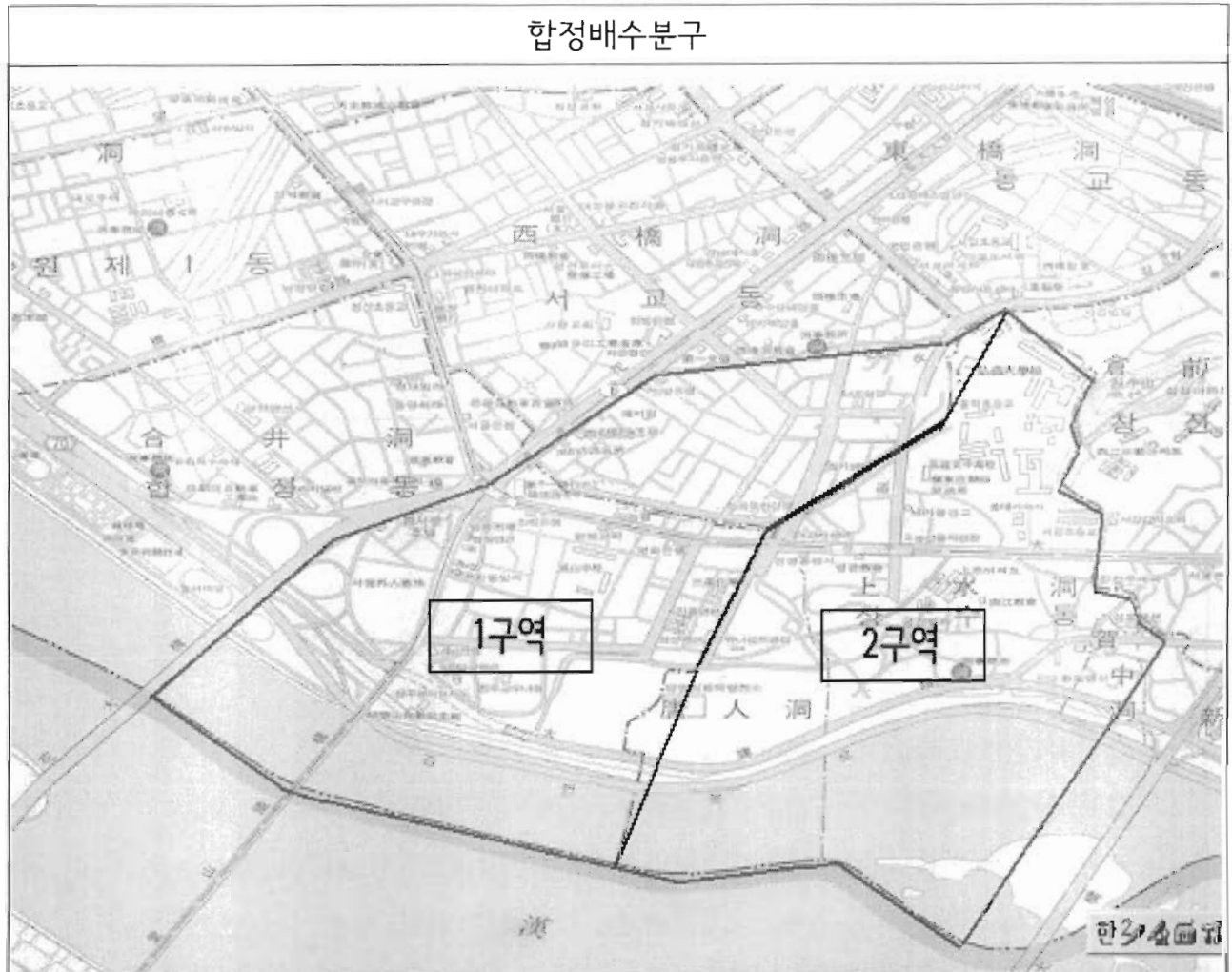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5차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8. : 공사 준공(최종 준공)

□ 소요예산

- 2,500백만원(시설비 2,360백만원, 감리비 140백만원)

□ 위치도



前 (서교동 잔다리길 주변)



後 (서교동 잔다리길 주변)

2. 재해 방지를 위한 하수시설물 정비

기존 하수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른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가 발생하고 있어 하수관로의 통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수시설물을 개량 및 보수·보강함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6.
- 사업위치 : 마포구 성미산로 96(연남동) 앞 외 4개소
- 사업규모
 - 하수암거 개량(1개소) 2련▣1.8m×1.6m, L=15m
 -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2개소) D=900~1,200mm, L=433m
 - 하수암거 보수·보강(2개소) L=1,460m, A=3,929㎡
- 총사업비 : 1,452백만원(시비)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6. : 공사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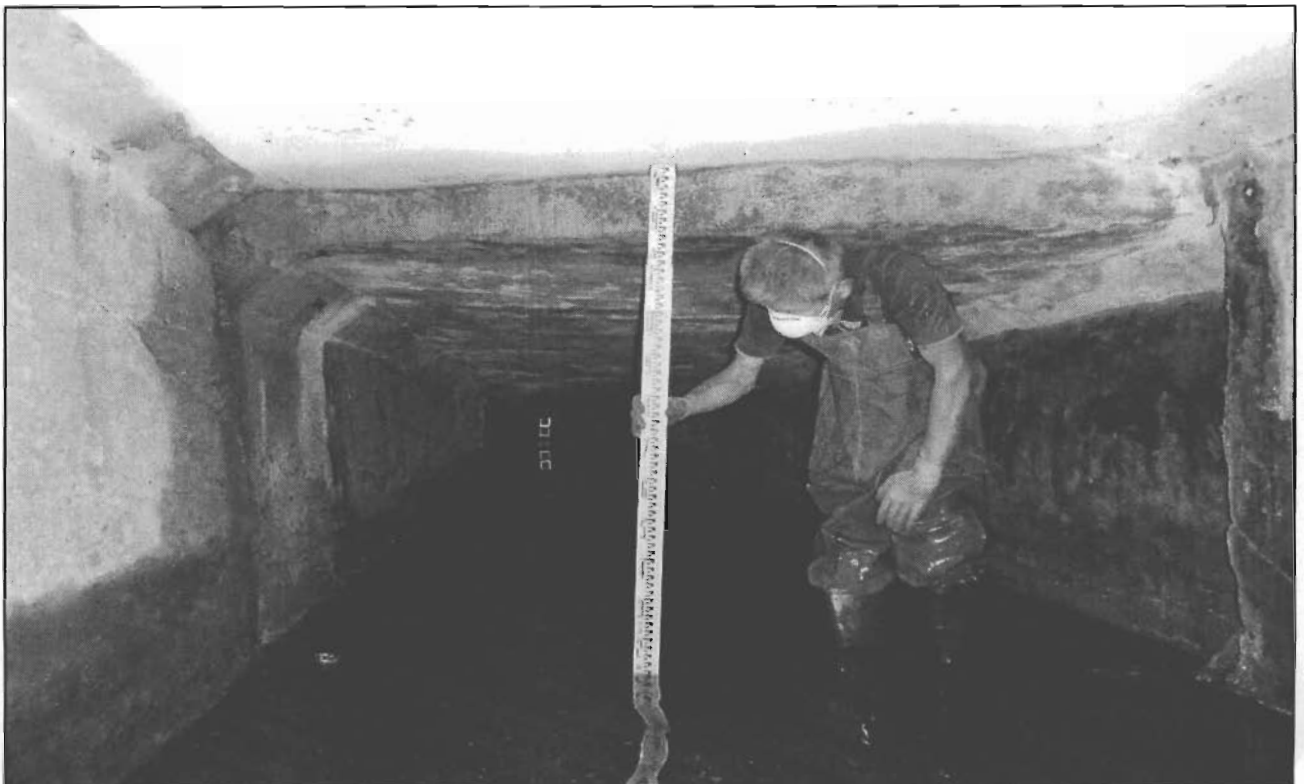
□ 소요예산

- 1,452백만원(시비)
 - 하수암거 개량(1개소) 2련▣1.8m×1.6m, L=15m(150백만원)
 -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2개소) D=900~1,200mm, L=433m(410백만원)
 - 하수암거 보수·보강(2개소) L=1,460m, A=3,929㎡(89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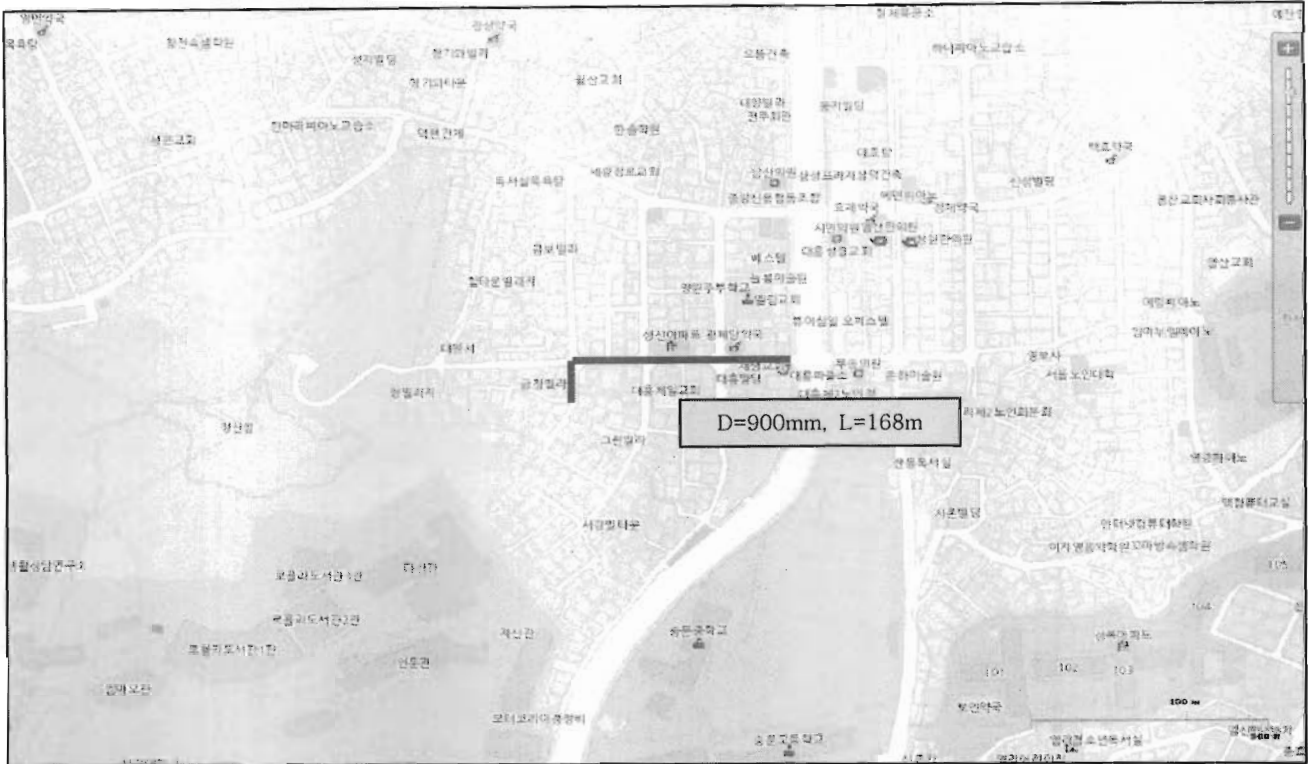
□ 위 치 도(성미산로 96 (연남동) 앞 하수암거 개량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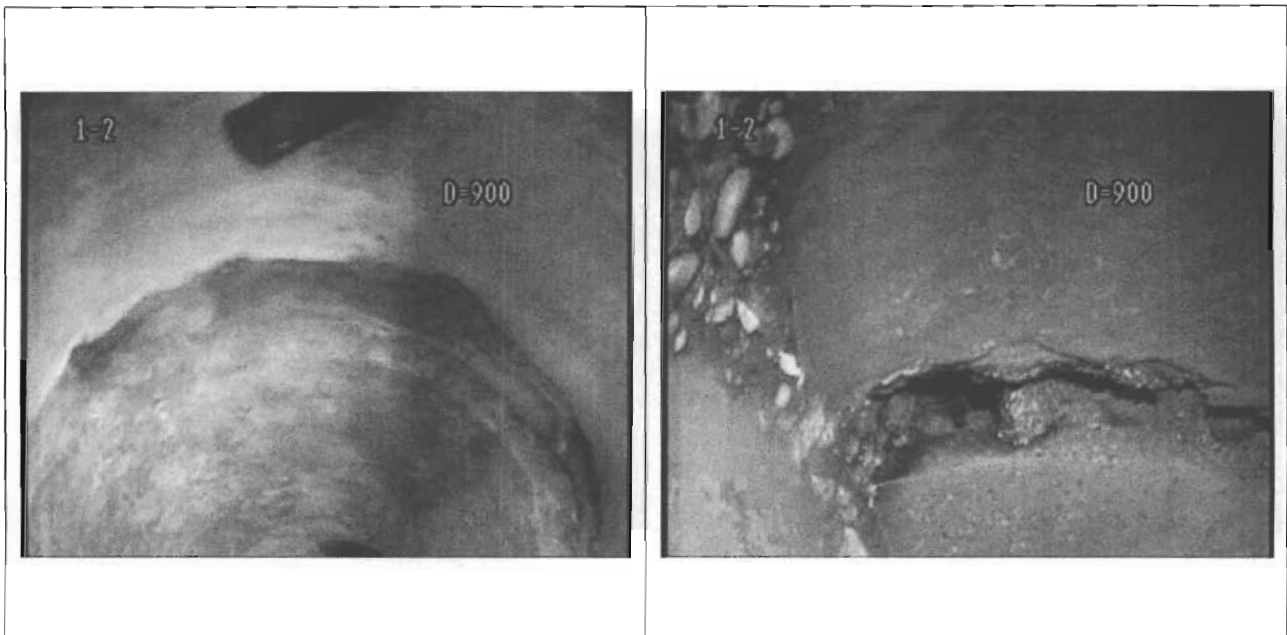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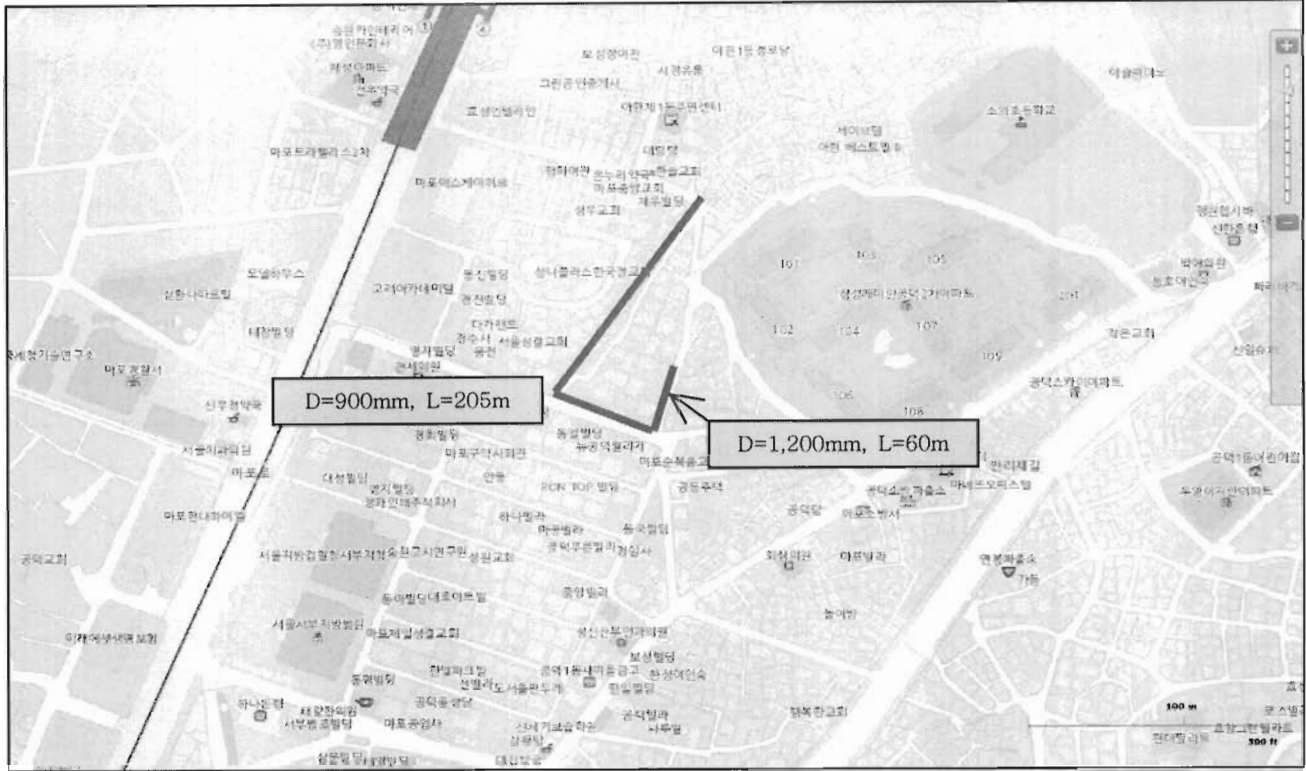
□ 위 치 도(대흥로 157-2(대흥동)~고산14길 33(대흥동)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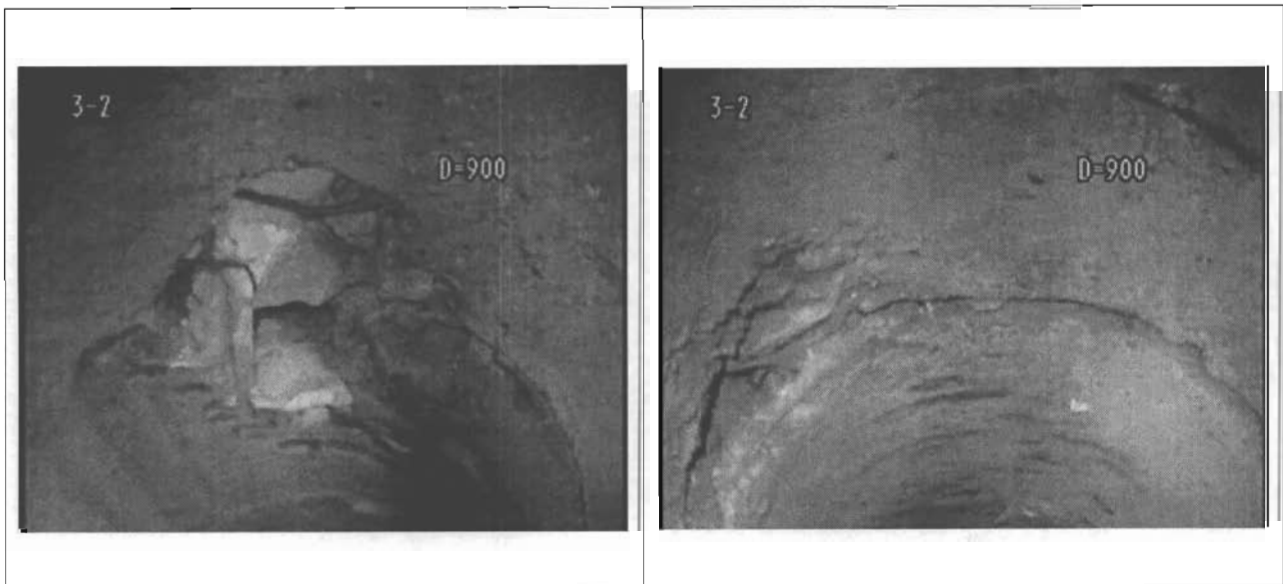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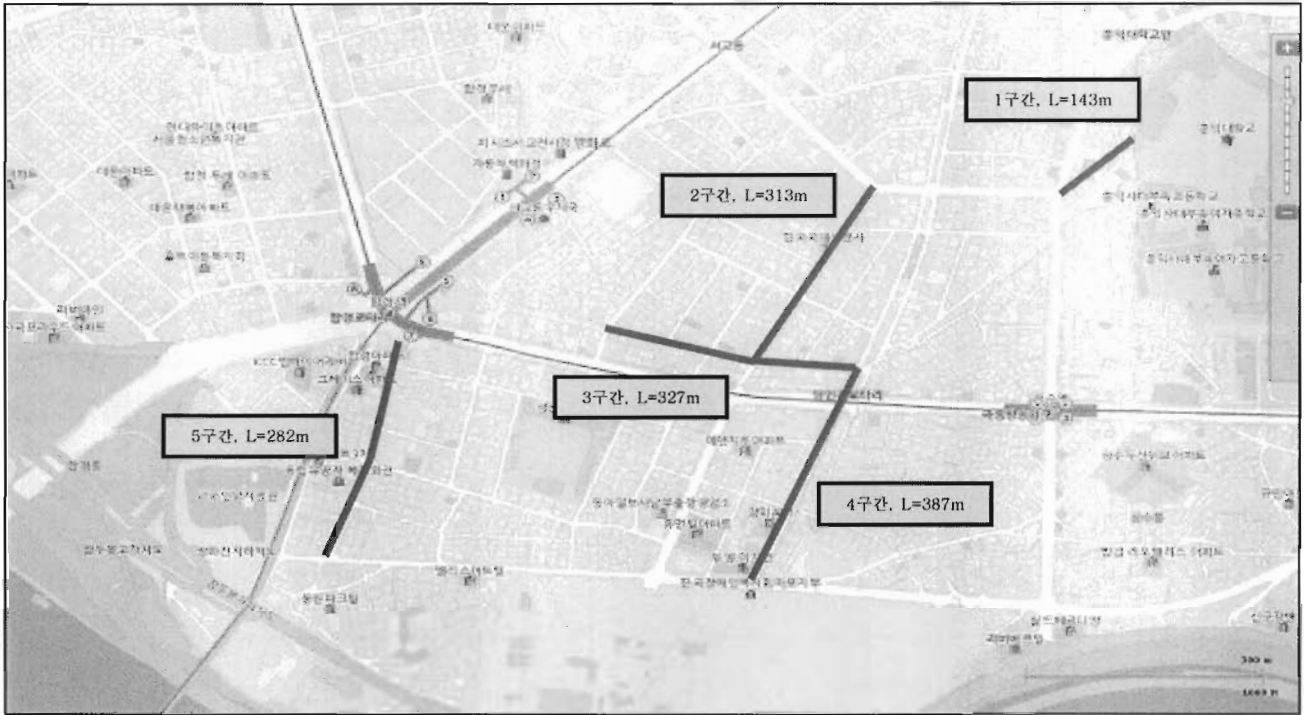
□ 위치도(마포대로 16가길 17 ~ 16-길 12-1(공덕동) 하수관로 비굴착정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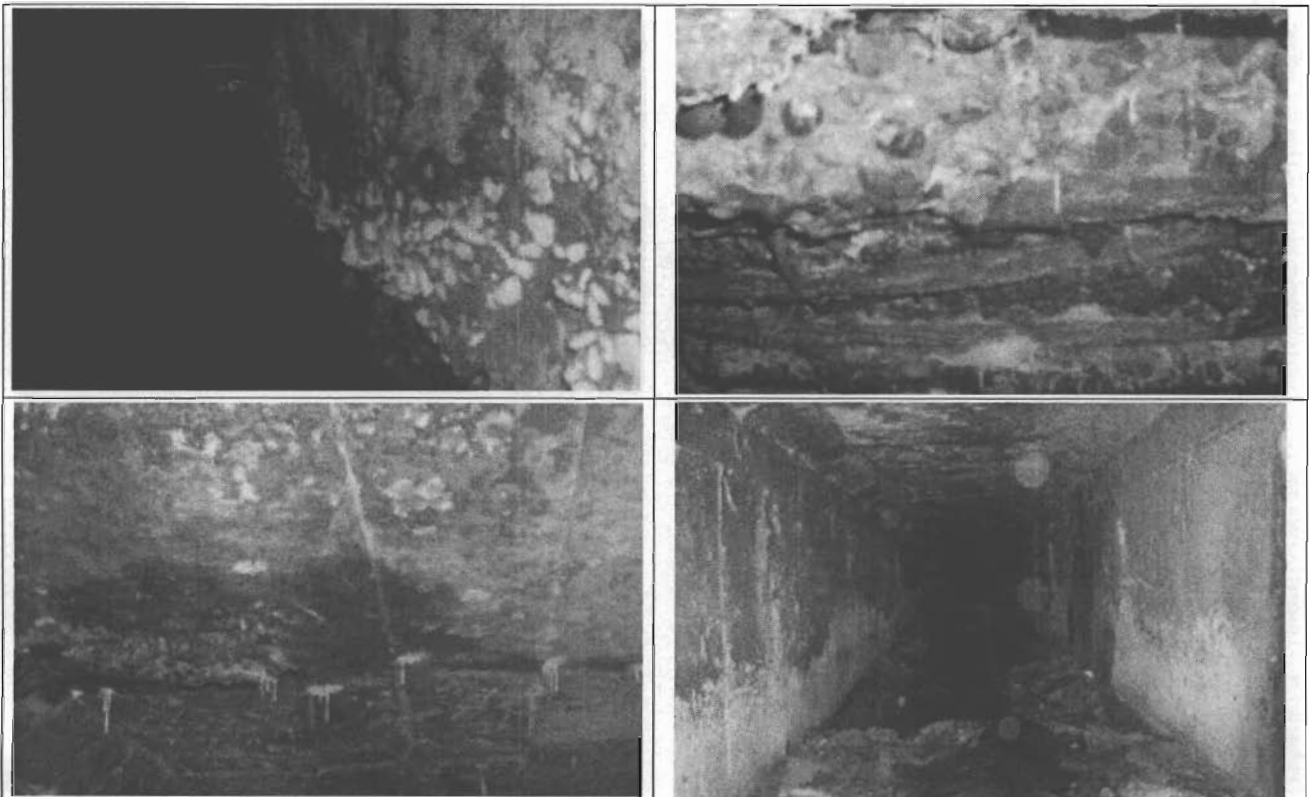
□ 현황사진



□ 위 치 도(합정배수분구 내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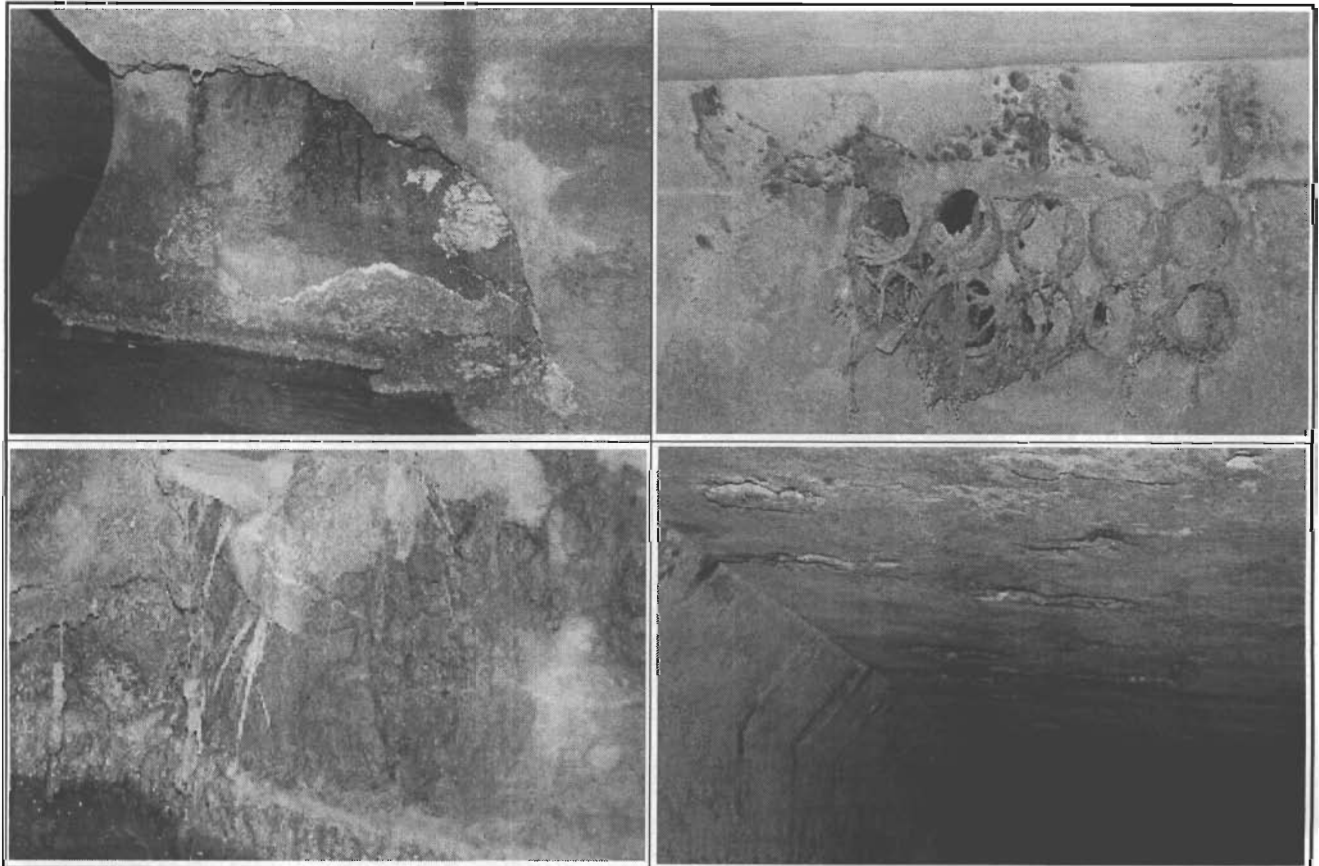
□ 현황사진



□ 위 치 도(홍대입구역 주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 현황사진



3. 하수시설 긴급복구(연간단가)

관내 하수관로 긴급 복구 및 유지관리용 자재 확보로 사전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사업대상 : 관내 하수시설물(하수관거, 빗물받이, 맨홀 등)
- 사업규모
 - 하수관 개량 3,000m, 하수관CCTV 조사 5,000m
 - 불량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40개소
 - 시멘트 외 7종 자재 구매
- 총사업비 : 1,128백만원(구비)
(하수시설물 1,000백만원, CCTV 40백만원, 불량맨홀 40백만원, 자재 구매 48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공사 준공

□ 소요예산

- 1,128백만원(구비)
 -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 1,000백만원
 - 관내 CCTV 조사용역 : 40백만원
 - 관내 불량맨홀 정비 : 40백만원
 - 시멘트 외 7종 자재 구매 : 48백만원

4. 하수관거 준설(연간단가)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적기 준설로 재해예방,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하수관거 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오수정체로 인한 악취저감 및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침수피해 등 수해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대상 : 관내 공공 하수관로, 빗물받이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준설 50km, 빗물받이 준설 23,000개소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사업비 : 1,15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공사 완공

□ 소요예산

- 하수관로 준설 : 1,000백만원 (구비)
- 빗물받이 준설 : 150백만원 (구비)

5. 하천시설 긴급복구(연간단가)

수해로 인하여 파손된 하천시설물의 복구와 하천산책로 이용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하천미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위치 : 홍제천, 불광천, 향동천
- 사업규모
 - 석축쌓기(찰쌓기) 200㎡, 조경석 쌓기 100ton
 - 돌붙임(찰붙임) 200㎡
 -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0m
 - 저수호안 잡초제거 10,000㎡
 - 하천준설 1,000㎡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공사 완공

□ 소요예산

- 사 업 비 : 200백만원(구비)

6. 성산1교 인근 외 1개소 비상대피시설 개선공사

홍제천, 불광천 비상대피시설(계단)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돌발 강우시 하천 이용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2. ~ 2014. 5.
- 사업위치 : 홍제천 성산1교 인근 외 1개소
- 사업규모 : 합성목재(데크) 설치 166,20㎡, 합성목재(난간) 설치 129m
- 사업내용
 - 성산1교 인근 비상대피시설 설치 1식
 - 상암교 인근 비상대피시설 설치 1식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공사 완공

□ 소요예산

- 사업비 : 97백만원(시비)

7. 망원2빗물펌프장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조적벽체의 전체적인 수직균열 발생 및 탈락 등 노후화로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펌프장 이미지 개량 정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6. 30.
- 사업대상 : 망원2빗물펌프장(동교로 7)
- 사업내용 : 건축 연면적 874.7m²(지상2층) 개량정비

□ 세부추진계획

- 2014. 1. 31. : 서울시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
- 2014. 2. 28. : 공사 계약
- 2014. 6. 30. : 공사 준공

□ 소요예산

- 사업비 : 849백만원(시비)
 - 건축 785백만원, 전기 64백만원

8.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관내 침수지역 및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시설·물막이판)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대상 : 관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주택
- 사업규모 : 역류방지시설 설치 600개소, 물막이판 설치 1,150m
- 사업위치 : 관내 전지역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공사 완공

□ 소요예산

-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50%, 구기금50%)

9. 서강대교 하부 자재창고 이전

서강대교 북단 접속교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의 현장사무실 및 자재 창고에 대하여 소음, 분진 등의 사유로 이전 요청하는 민원(한강밤섬 자이아파트 주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망원1빗물펌프장 내 유희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3.
- 사업위치 : 망원1빗물펌프장 내 유희 부지
- 사업규모 : 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 설치 A=500㎡
- 총사업비 : 80백만원(구비)
- 기존 자재창고 현황
 - 위 치 : 서강대교 북단 접속부 하부
 - 점용면적 : 660㎡
 - 점용기간 : 2006년 ~ 현재
 - 점용용도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및 자재 창고
- 민원 개요(한강밤섬자이 아파트)
 - 하수시설물 자재 창고 사용 중 주거 지역내 소음, 분진 등의 사유로 이전 요청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3. : 공사 준공

□ 소요예산

- 사업비 : 80백만원(구비)

□ 위치도



10.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빗물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제작사 및 전문기관의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유지관리로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 빗물펌프장 10개소
- 사업내용
 - 제작사 안전점검 1회, 전문기관 안전점검 1회, 자체점검(수시)
 - 시설물 분야별(전기, 기계, 도장, 건축물 등) 유지보수 공사 시행
- 사업위치 : 망원1펌프장 등 9개소

□ 세부추진계획

- 2014. 1. 15. :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계획수립
- 2014. 2. 10. ~ 2014. 3. 14. : 수방시설 제작사 및 전문기관 점검
- 2014. 2. 17. ~ 2014. 7. 30. : 수방대비 시설물 보강공사(분야별)
(기계, 전기, 건축, 도장 등)
- 2014. 3. 17. ~ 2014.11. 30. :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8. 1. ~ 2014.11. 30. :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후관리공사)

□ 소요예산

- 사업비 : 250백만원(구비)

11. 수방대비 체계확립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주택 침수가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풍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대상 : 관내 저지대 침수가구
- 사업규모
 - ▶ 수방민간위탁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 담당권역 재조정
 - 당초 : 5개 권역 (서교, 연남지역 집중관리)
 - 변경 : 6개 권역으로 확대(2개 권역씩 3개업체가 집중관리)
하수구조물, 하천, 준설연가단가업체 활용
 - ▶ 저지대 하수역류주택 양수기 지원
 - 상습침수세대 양수기 고정배치(당초 38가구 ⇒ 100세대로 추가·확대)
 - 침수우려지역 양수기 거점관리 고정배치 운영
 - 해당지역 : 서교·연남·망원 등 침수우려지역
 - 관리방법 : 침수우려지역 통장 책임하에 보관 및 필요시 배부
 - 운영방법 : 해당거점(통장)당 양수기(5대) 배치 - 20개통 1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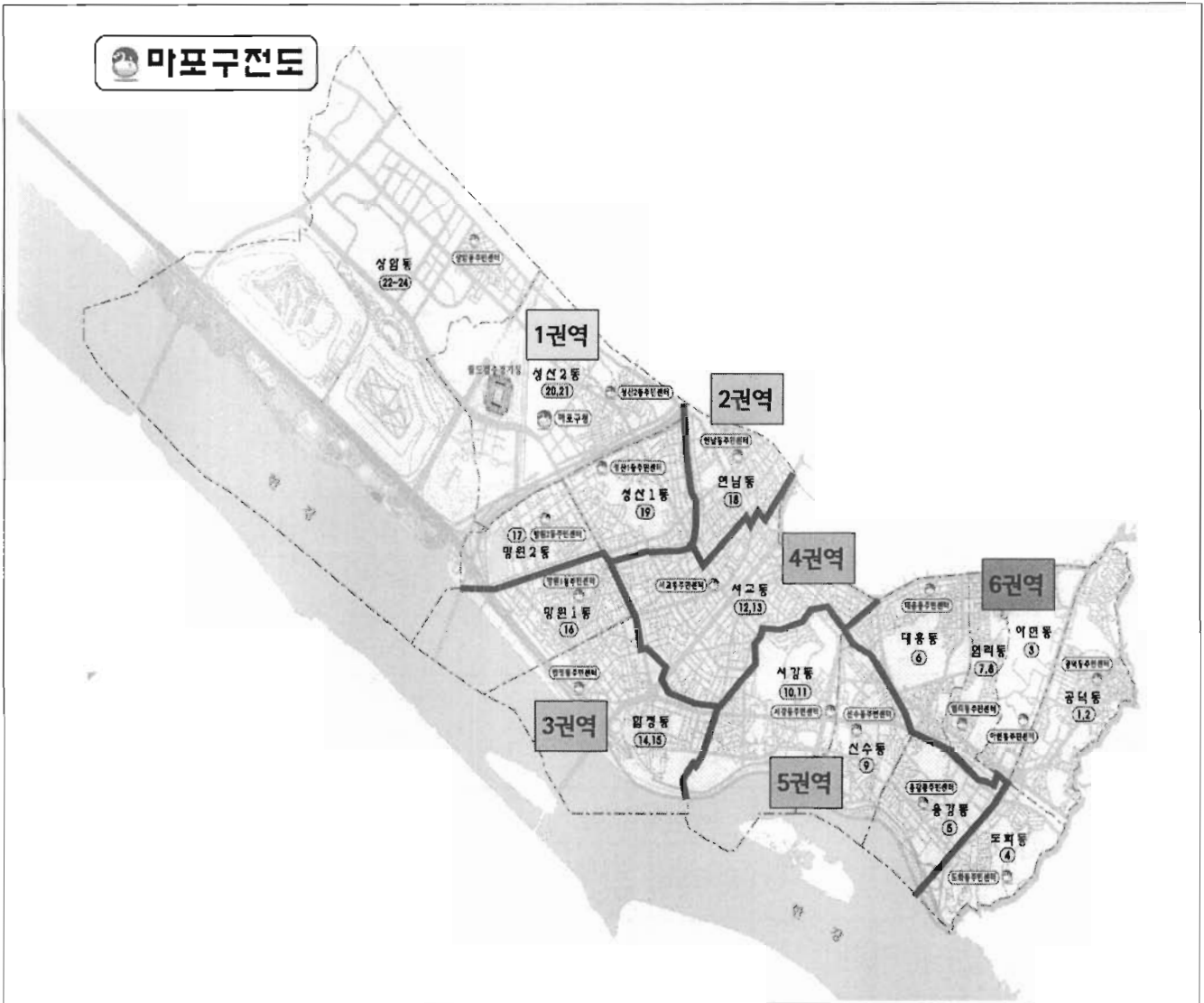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공사 발주
- 2014. 2. : 공사 착공
- 2014. 12. : 공사 완공

□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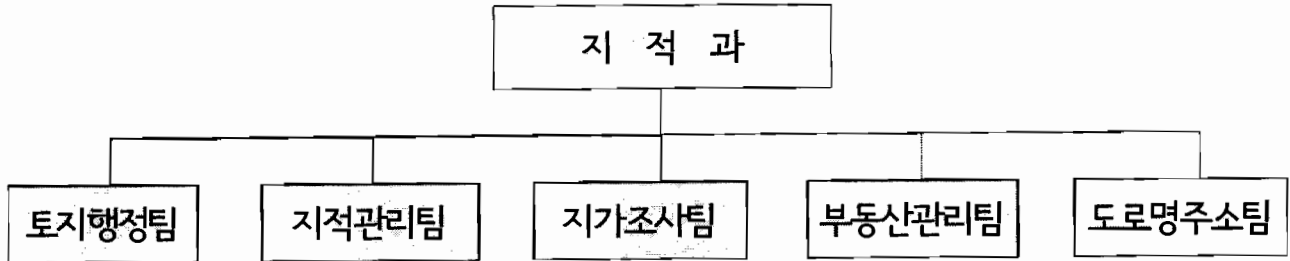
- 수방민간위탁용역 : 100백만원

수방민간위탁 권역별 위치도



지 적 과

□ 조직 현황



□ 인력 현황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26		1	6	8	6	4	1	
현 원	25		1	7	10	3	3	1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계	구성원(명)		임 무
		공무원	외부인사	
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15	6	9	주택 및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심의·의결
마포구도로명주소위원회	9	4	5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의결
마포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5	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지적공부 관리현황

구 분	토지(임야)대장 (전산)	지적(임야)도 (전산)	경계점좌표등록부	구 토지대장	폐쇄도면
매 수	51,299	782	2,089	83,675	1,77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현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등의 분할규제로 인한 소유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구민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 아현동 326-2번지의외 34건
 - 관내 토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 토지대장과 건축물 현황자료 D/B 검색으로 호환자료 추출 활용
- 추진근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1363호 제정

□ 세부추진계획

- 2014. 1. ~ 12.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홍보(내고장마포, 대중매체)
- 2014. 1. ~ 12. : 분할신청대상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운영
- 2014. 1. ~ 3. : 아현동 326-2번지의외 34건 관련공부 및 현장확인등 정밀조사하여 현황조사표 작성
- 2014. 4. ~ 5. : 토지소유자 분할신청 안내문발송을 통한 신청독려(1차)
- 2014. 6. ~10. : 현황조사표에 의거 직접 방문하여 공유자간 자율적인 합의 분할 및 청산안내
- 2014. 11. ~12. : 토지소유자 분할신청 안내문발송을 통한 신청독려(2차)

□ 소요예산 : 3.2백만원(구비)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수당 : 1.6백만원
- 공유토지 조사·운영 및 위원회 업무추진비 : 1.6백만원

2.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권 분쟁 사전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9.16제정, 2012.3.17시행]
- 사업비 : 1.3백만원(구비)

□ 추진계획

- 2014. 1. ~ 3. : 지적재조사조례 제정 계획수립
- 2014. 4. ~ 6. : 지적재조사조례 제정
- 2014. 7. ~ 9.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 지적재조사위원회(10명 이내) : 재조사사업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능
 - 경계결정위원회(11명 이내)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 의결
- 2014. 10. ~ 12.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소요예산 : 1.3백만원(구비)

3.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부응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중 조사가 필요한 토지(45,929필지)
- 조사기간 : 2013.11.18 ~ 2014.12.31
- 결정공시 : 연2회(정기:5월30일, 수시:10월31일)
- 조사내용 : 개별 필지별로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하여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국·공유지 점용 부과기준으로 활용

□ 세부추진계획

-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2013.11.18 ~ 2014. 5.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30 공시
-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2014. 6. 9 ~ 10.3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31 공시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51백만원(구비)
 - ※ 국비지원 : 31백만원(2013년도 기준)

4.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신의성실의무 준수 등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적법한 중개행위로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 1,025개소(공인중개사 894, 중개인 122, 법인 9)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6조, 제137조
- 사업내용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위반행위 및 투기조장 행위 등 중점 단속
 - 자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점검제 실시(마포구 홈페이지 활용)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및 글로벌부동산 법 이행여부 점검 추진
 - 『길 알림이』 및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와 간판등 외관디자인 개선실시

□ 세부추진계획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계획수립 : 1월
 - 봄·가을이사철 중개업소 지도단속 : 봄(3~5월), 가을(9~11월)
 -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실시 : 1월, 8월
- 부동산 거래 및 중개문화 선진화사업 계획수립 : 2월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글로벌부동산 법 이행 준수여부 점검 : 6월
-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 9~10월
-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http://www.mapo.go.kr>)

□ 소요예산 : 9백만원(구비)

5.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성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등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대상 : 도로명주소 시설물 28,072개소
 - 도로명판(1,401개소), 건물번호판(26,668개소), 지역안내판(3개소)
- 사업내용
 - 도로명(건물)번호 부여·변경, 고지·고시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 추진
 - 주소정보 관련 데이터, 시설물 등 정비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 세부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홍보
 - 2014. 1. ~ 12.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반상회, PCRM, 홈페이지 등)
 - 2014. 1. ~ 12. :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 2014. 2. ~ 3. : 민간기업 등 각종 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소전환 및 사용 독려
 - 2014. 4. ~ 7. : 내고장탐방 견학 연계 초등학교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 2014. 2. ~ 4. :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건물명칭 현장 전수조사(1차)
 - 2014. 5. ~ 6. : 전수조사 결과 조치(시설물 정비 및 전산D/B 수정 등)
 - 2014. 8. ~ 10.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2차)
 - 2014. 11. ~ 12. : 전수조사 결과 조치(시설물 정비 및 전산D/B 수정 등)

□ 소요예산(58백만원)

-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보수비 : 21백만원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 유지관리비 등 : 37백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1
----------	-------

제출년월일 : 2014.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여 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감면 조항 삭제(안 제7조)

- 「도로법」 제4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점용료의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 조례에 점용료 감면 규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

- 「도로법」등 이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도로법」 제42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6.(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3.12. 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에 따라”로 하고,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를 “부과·징수에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5항제9호”를 “제28조제5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을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를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생활정보지회사”를 “생활정보지 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각각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점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점용료 및 변상금”을 “점용료 등”으로,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를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재 위탁”을 “한 차례만 재위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중 “10.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u>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u>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u>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u>제28조제5항제9호</u>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탑, <u>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u>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u>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u>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u>는 <u>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u> 	<p>제1조(목적) ----- ----- -- <u>시행규칙에 따라</u> ----- ----- ----- ----- <u>부과·징수에 필요</u>----- -----.</p> <p>제2조(도로점용허가) ----- ----- ----- -- <u>제28조제5항제10호</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u> 및 ----- ----- 2. -----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및 -- ----- <u>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u>-- <u>생활정보지 회사</u>-----

에 한한다.

3.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시
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
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
가대상 시설물)의 도로점용허
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
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
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
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
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을 부과·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
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
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제41조제3항 -----

-----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자에게-

자에게-----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 3개월 -----

④ -----

----- 1개월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
----- 제80조제1항 -----

----- 점용료 등 -----

② ----- 점용료 등 -----
-----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
----- 제80조제1항 -----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삭 제>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9조의3(점용물의 철거 등)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 제21조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점용물의 철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차례만 재위탁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0.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생 략)	(생 략)	(생 략)

제11조의2(준용규정) -----

- 관하여 -----

-----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월 20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상 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월 7일 (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4년 1월 9일 (목)

4. 관련근거

가. 「도로법」 제42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감면 질의 회신 통보 (보도환경개선과-10187)

5.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가. 점용료 감면조항 삭제(안 제7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위법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도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점용료 감면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감면 조항은 위임입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초과입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제7조 전체를 삭제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중 “제28조제5항제9호”를 “제28조제5항제10호”로, 안 제3조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안 제5조 중 “제71조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안 제8조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1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로 서울특별시도 2013년 7월 16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시달하여 마포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점용 및 향후 영구점용에 대해 감면조치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점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자치구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 요구에 따라 마포구가 소급 적용하여 부과한 점용료는 총 13건 1,110백만원임.

질의회신 통보

가. 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으로 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 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호를 근거로 시장이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민자사업자가 점용하는 점용지에 대해 전액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바, 조례의 규정에 따른 방침으로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도로법의 감면 규정상 위법여부 및 조례의 해당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도로법의 감면 규정을 벗어나 무효가 되는지 여부

나. 국토교통부 회신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은 법률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로법령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당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점용료 감면에 관한 도로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살펴보면, 점용료감면은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고, 재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점용료 감면은 점용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서울시의 점용료 관련 조례의 감면에 관한 해당규정은 도로법의 감면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일 뿐 아니라 위임입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초과입법에 해당하여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무효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 점용료 감면방침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른 마포구청의 점용료 감면조치도 무효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10187 (2013.07.16.)】

관계법령 및 근거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시행령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3.23>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 도로법시행규칙

제25조(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은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2008.09.30., 2011.7.28., 2013.10.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04.17., 2008.09.30., 2013.10.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 ③ 생략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01.31)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시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